

대학원 심리학과 운영 내규

2018년 1월 29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심리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심리학과 소속 교수들은 심리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전공에 따라 심리학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는 시험과목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제5조 (과목개설) 매 학기 6개 내외의 교과목을 개설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교과목 담당은 관련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교·강사를 배정하며 전임교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첫 학기 말(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을 18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 이상 취득한 자,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을 27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 이상 취득한 자는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1. 학술지(SCI급 학술지 혹은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함으로써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논문을 2편 이상 게재(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함으로써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종합학력시험 면제에 대한 승인은 심리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 이상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10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1.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진행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한다.
2. 필기시험 과목은 석사과정인 경우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박사 과정인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3. 필기시험, 구두시험 모두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11조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각 학위과정 1학기를 이수한 이후부터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내국인 학생인 경우 영어, 외국인 학생인 경우 영어(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제13조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1. 공인어학성적으로 인한 면제 신청 시 내국인 학생은 영어 성적 이외에 다른 언어(독어, 불어, 중어, 일어, 노어, 서반아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성적(TOPIK 5급 이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으로만 선택이 가능하다.
2.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내국인 학생은 영어권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상기 언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도 면제가 가능하며 외국인 학생은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서만 면제가 가능하다.

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4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1. 학위 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그에 앞서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석사논문 심사는 1회, 박사논문 심사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3회를 할 수 있다.
3. 심사는 논문심사와 30분 내외의 발표 및 구술시험으로 진행한다.
4. 심사에 합격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의 확인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2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6. 재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위논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위과정의 수료만을 인정한다.

제15조 (예비발표)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학위논문심사에 앞서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하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위청구논문의 예비발표를 시키며,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예비발표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한다.

제16조 (논문심사위원)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석사 3인[교내 3인], 박사 5인[교내 3인(전임교원, 특별교원), 교외 2인]을 추천한다. 다만, 박사과정 논문심사에 있어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 승인 하에 심사위원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7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